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안민석 · 서영교 · 박 정

도종환 · 정성호 · 신현영

송갑석 • 김민기 • 문진석

고용진 • 이동주 • 전혜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으로 역대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음.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정기회와 함께 매 짝수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잦은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고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략함.

이로 인하여 민생 법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우리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을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과 12월 11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총선거가 있는 경우"를 "총선거일이 있는 월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임시회"를 "임시회"로,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개의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본회의"로 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4회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개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제2항 중 "제72조"를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 개의 횟수: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 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 1. 정기회의 회기 아닌 월(月) 의 1일과 12월 11일-----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 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 일이 있는 월에는----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 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2.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임시회-----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 -----. <u></u>다만, 임시회 일까지)로 한다. <단서 신 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설>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신 설> 3. 제7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 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 기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u>3.</u> (생 략)

제8조(휴회) ① (생 략)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제72조(개의) (생략)

<신 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생 략)

② 의장은 <u>제72조</u>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를 위한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개의한다.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제	8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
제	72조(개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
	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개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3조(의사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72조제1항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2.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	<u>○</u>)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제72조제2형	본문에 따른 법
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 개
의 횟수: 정	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기 중 2회 이상